

X-1°
13
22
K-1



2026
김중규
햇총
햇칼리는 부분 총정리

선행정학

시험 직전 막판 뒤집기
2025년 정부조직 개편 완벽 반영

2026 헛총 선행정학(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선행정학)을 펴내며

“

일선 수험현장에서 수십년간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느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의 행정학 공부방법(특히 마무리)상 차이점입니다. 시험을 앞둔 모의고사에서도 일관되게 고득점을 하는 상위권 수험생들과 안타깝게도 점수가 기복이 심하거나 합격권과는 거리가 먼 60~70점대에 맴도는 하위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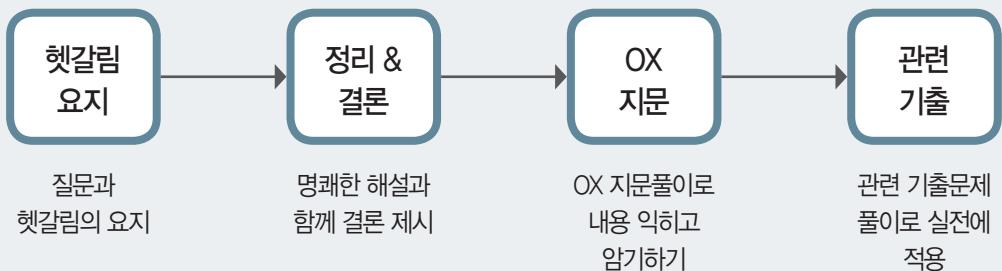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다 보니 학설과 이론간에 서로 대립·모순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암기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이 안됩니다. 합격생들이나 고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있는 반면, 불합격생들이나 저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인가, 지방의회인가?]에서 결론은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즉 [외부대표 : 단체장, 주민대표 :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자본예산은 안정화를 저해하는가, 안정화에 기여하는가?]에서 결론은 경제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재정안정화는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 안정화, 재정 : 불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또는 “안정”이란 단어에만 매달려 있으면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60~70점대에 머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준다면 바로 점수가 30점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할 시간과 여유가 안된다면 제가 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에 공단기에 오시면 이 교재로 강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학, 헷갈리는 부분 160제 총정리 특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강(총16강)으로도 바로바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와 강의는 주제별로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헷갈림의 요지를 제시하고 → 명쾌한 결론(해설)을 제시한 다음 → OX풀이로 지문암기를 시켜주고 → 관련기출문제를 제시하여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OX지문 암기입니다. 9/7급 막론하고 초시생, 재시생이나 군무원, 공기업, 경간부, 경정승진 등 모든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사상 최초의 역대급 특강입니다. 극히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는 9급수험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니 반드시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교재는 최근 2~3년간 질문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기출문풀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높은 부분, 불합격생들 상담결과, 그리고 합격생 인터뷰 등을 토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헷갈려하는 취약부분과 신경항이슈를 카스파 합격생 연구원들과의 열띤 토론을 거쳐 기출기반으로 엄선 · 정제하였습니다.

요즘 행정학은 정형화된 판박이형 기출문제만 뒤따라가는 뒷북치는 식의 소극적인 공부방법으로는 절대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기면 7~8문제는 늘 헷갈리거나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당락은 그런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까진 많이 안나왔지만 앞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할건 정리하고 대비할건 대비하는 한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0~70점대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수험생들은 뭔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헛총선행정학으로 그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재나 선생님으로 공부를 하셨더라도 이 헛총선행정학 만큼은 반드시 한번 접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교재와 강의를 접하는 순간 “아하,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시험을 봤으니 점수가 나올리 있나?”하는 통렬한 반성과 후회가 찾아들 겁니다. 행정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실하게 30점 UP시켜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교재 · 강의입니다.

2025. 12. 19.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7/ 중 7/

T E S T I M O N I A L

합격생 추천의 글

행정학은 꼼꼼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저는 초시부터 재시까지 김중규 교수님의 커리를 모두 따라왔습니다. 모든 커리가 좋았지만 헛종은 특히 행정학에서 헛갈리는 부분들을 따로 테마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들에 대한 정리에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같은 단어를 써도 어디에 어떤 문맥으로 쓰이나에 따라서 아예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수험문제풀이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공부에 있어서는 개념+기출+동형 그 무엇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가장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목 특성상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데 교수님의 커리를 믿고 본인이 꼼꼼히 공부한다면 행정학 고득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헛갈리는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다나에 정리해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4 서울7급 합격 박주원 –

행정학 고득점의 지름길, 헛종

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부분을 나중에 한번에 정리하려니 찾아다니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헛종을 통해 헛갈리는 부분을 보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문제 풀이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개념과 관련되는 문제가 함께 실려 있어 기출문제집을 다시 찾아봐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행정학에서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헛종을 통해서 헛갈리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어 출제되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 고득점으로 가기위한 지름길로 헛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2023 국가7급 합격 노성균 –

행정학 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교재

수험 과목으로써 행정학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알고도 틀리는 과목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종 교재와 강의는 이러한 행정학 수험생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자신 있게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콘텐츠입니다. 헛종은 이미 행정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에게는 빠른 시간에 핵심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회독용 교재이며, 공부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행정학 고득점에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채워 넣어주는 교재입니다. 꼭 강의와 함께 교재를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며, 회독 후 한층 단단해진 행정학 지식과 유연해진 문제풀이 스킬에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행정학 전략교재 헛종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더 가깝게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 2022 서울9급 합격 김준범 –

TESTIMONIAL

본인을 믿고, 교수님을 믿으세요!

처음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고 첫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김중규 교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재와 커리큘럼에 큰 믿음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학 100점을 목표로 삼았고, 기본강의와 기출강의를 차근차근 따라갔더니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기본 85 점은 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약간 기고만장해져, 다른 강의는 들을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고 기본서와 기출 회독수만 늘려갔지만 85점의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헷총 강의였습니다. 헷총강의로 알쏭달쏭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니, 더 심화된 내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학적 마인드와 사고가 가능해져 신경학문제나 고난도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의타 고난도 특강, 법령노트 선행정학, 모의고사 강의 등을 통해 100점을 위한 그물을 촘촘하게 만 들어 나갔습니다. 덕분에 24년 서울시 7급 시험에서 행정학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은 거두시고 반드시 된다는 마음으로 교수님만 믿고 따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겁니다.

– 2024 서울7급 합격 신지연 –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강추

통념과 다르게 행정학은 암기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인문과학도 그렇겠지만 특히 행정학은 한 개념어가 일의적이지 않고 학파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와 선지에 맞추어 개념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파, 학자와 대응되는 개념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에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인 헷총은 어느정도 암기와 이해가 되어 있는 70~80점대의 수험생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딪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의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추론들을 담아 그것들에 대한 김중규 교수님의 명쾌한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서에 있는 헷갈리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회독할 때나 이후 단권화할 때에도 좋습니다. 특히 인문과학적 베이스가 없어서 행정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해설을 읽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을 과외 받듯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023 서울7급 합격 문아현 –

헷갈리던 내용을 명확히 이해시켜주는 책

행정학은 기본서와 기출을 어느정도 공부하고 나면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왜 또 아니라고 하지?' 하며 책을 뒤적거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헷총'으로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까다로운 개념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들이 함께 실려있어 개념을 알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좋았습니다. '헷총'을 디딤돌 삼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2022 국가9급, 서울9급 합격 허소정 –

0 | 책의 페이지 구성과 특징

주제 일련번호

주제 (Theme)

햇갈림 요지

키워드

정리 & 결론

정답

정답해설

오답해설

OX

정리표

OX 정답

장 일련번호

장 제목

중요도

난이도

최근10년간 출제횟수

2015 선별정학 p.17

2013 국회8급

2015 선별정학 p.18

2015 선별정학 p.18

장 내용 표시

쪽수 암기법

13

Chapter 01 行政학 기초이론

주제 일련번호

주제 (Theme)

햇갈림 요지

키워드

정리 & 결론

정답

정답해설

오답해설

OX

정리표

OX 정답

장 일련번호

장 제목

중요도

난이도

최근10년간 출제횟수

2015 선별정학 p.17

2013 국회8급

2015 선별정학 p.18

2015 선별정학 p.18

2015 선별정학 p.18

장 내용 표시

쪽수 암기법

13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h 01 행정학의 기초이론

01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정치	13
02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본질적 원인	14
03 진보주의 & 보수주의 정부관	15
04 포스트모더니티 & 인간관	17
05 포스트모더니티 & 융합·통합	18
06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19
07 민영화와 서비스의 질	20
08 공익의 실체설과 갈등	21
09 권리주의적 공익관	23
10 공익 실체설의 다양한 유형	24
11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27
12 내용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30
13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 & 중복	32
14 기술성과 기술적 행정학	34
15 Wilson과 기술성	35
16 행태론과 가치	36
17 체제론과 개방체제의 성격	38
18 신행정론과 고객중심의 행정	40
19 현상학 & 행태론	41
20 현상학의 연구대상	43
21 공공선택이론과 정치·행정	45
22 공공선택이론과 대응성	46
23 신제도론과 상호작용	47
24 신제도론과 제도의 지속·변동	49
25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성	51
26 신공공관리론과 임무중심의 행정	53
27 거버넌스 유형과 기업형정부	55
28 논변적 접근법	56
29 신공공서비스와 공익의 본질	58
30 NPM과 행정의 본질	60
31 NPM과 PCM에서의 정부역할	62
32 행정재정립운동	64
33 분절화와 NPM·GOV	67
34 네지이론	70
35 공공가치관리론	73

Ch 02 정책론

01 공적보험과 직접성	79
02 강제성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	81
03 재분배정책과 안정성	83
04 정책오류	85
05 정책네트워크모형과 갈등	87
06 조합주의와 협력관계	89
07 브레이нст로밍과 질적 예측	90
08 제한된 합리성과 의사결정모형	92
09 점증주의와 갈등	95
10 점증주의와 사회의 안정성	96
11 회사모형과 쓰레기통모형의 전제조건	97
12 Nakamura & Smallwood의 집행모형과 협상	101
13 Nakamura & Smallwood의 집행모형과 집행자의 재량권	104
14 측정요소(시험요인)와 다수처리간섭	107
15 자연실험과 사회실험	109
16 정책승계, 정책혁신, 정책유지	112

Ch 03 조직론

01 Mintzberg의 전문관료제와 공식화	117
02 유기적 구조와 성과 측정	119
03 사업부제와 사업구조의 환경	121
04 전문화와 업무의 단순성	123
05 Adams의 공정성이론과 동기유발요인	125
06 직무특성이론	127
07 고전적 갈등관과 고전적 조직론	128
08 갈등해소와 조성전략	130
09 셀프리더십과 수퍼리더십	133
10 구조적 복잡성과 환경의 복잡성	135
11 기술의 유형과 통솔범위	138
12 기술의 유형과 복잡성	139
13 조직유형과 핵심역량 · 핵심과정	140
14 애드호크라시와 효율성	142
15 학습조직과 권력	144
16 훌라크라시와 애자일조직	146
17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148
18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150
19 책임운영기관 소속직원의 임용권	152
20 공공기관과 정부조직	155
21 각종 정책관리 및 평가주체	157
22 주인–대리인이론의 본질	160

Ch 04 인사행정론

01 업관주의와 능률성	163
02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165
03 직업공무원제와 행정의 전문성	167
04 대표관료제와 사회화	169
05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70
06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71
07 인적자원관리	174
08 대법원장 등의 신분	176
09 사무차장의 신분	177
10 개방형인사와 조직장악력	179
11 인사권자의 리더십과 인사제도	180
12 공직분류와 수직적 · 수평적 융통성	181
13 공직분류와 환경적응	183
14 시보기간과 신분보장	184
15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185
16 근본적 귀속의 착오 & 이기적 착오	187
17 직무성과계약제와 관리의 흐름	189
18 다면평가와 평정의 신뢰성	190
19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192
20 강임과 강등	194
21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195
22 노조전임자 등의 지위	197
23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199
24 겸임과 겸직	202

Ch 05 재무행정론

01	재정준칙	205
02	국가채무범위	208
0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10
04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12
05	예산의 원칙과 근거법률	214
06	예산완전성 원칙과 기금	215
07	합법성 통제와 합목적성 통제	217
08	통합예산과 예산순계	219
09	통합재정범위	220
10	제출·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	223
11	선형성의 다양한 의미	225
12	다중합리성모형	227
13	자원의 풍족과 가용자원의 여유	229
14	성과주의예산의 특징	231
15	성과주의예산에서의 성과의 의미	233
16	성과주의예산과 장기계획	234
17	성과주의예산과 능률성·효율성·효과성	236
18	성과주의예산과 정책목표	238
19	영기준예산과 경직성 경비	239
20	자본예산과 안정화	240
21	주요 재정제도 도입연도	242
22	신성과주의 예산과 예산의 흐름	244
23	신성과주의 예산과 예산통제	246
24	예산제도별 장단점	248
25	예산배정의 성격	250
26	국가재정법상 이월·이체의 원칙	253
27	세계잉여금과 적자 국채 발행	254
28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256
29	지출원인행위와 발생주의	257
30	총사업비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259
31	중앙과 지방에서의 현금흐름표	262
32	재정운영표의 구성	263
33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264

Ch 06 환류행정론

01	국민정서와 행정책임	269
02	정치행정일원론과 내부통제	270
03	옴부즈만의 성격	272
04	옴부즈만의 권한	273
05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275
06	정보화와 집·분권화	277
07	정보화업무의 소관 – 정보화기본계획	279
08	행정기관과 민원인	280
09	유연근무제	282
10	정보화 관련 최근 법률	284

Ch 07 지방자치론

0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심사항	289
02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291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293
04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과 주민접근성	295
05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296
06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298
07 권한의 위임과 위탁	303
08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와 법적 근거	304
09 지방정부형태와 책임성	306
10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	309
11 자치단체 대표기관	311
12 지방의회와 불신임권	313
13 지방의회 회의정족수	315
14 자치경찰제	317
15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20
16 부담금	323
17 국고보조금과 재정격차	325
18 의존재원과 지방재정의 안정성	326
19 지방재정 위기관리	328
20 공직선거법 개정과 주민투표연령	331
21 주민조례청구제도와 간접발안	333
22 주민소송과 납세자대표소송	336
23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청구요건	339
24 「지방자치법」 세부 개정내용	341

17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2026 선행정학 p.395

아 헷갈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건가요?

OX

[1]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새만금개발청, 행복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2]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정리

- ① 2026.1.2.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9부 6처 18청 6위원회**이고, 2026.10.2.부터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가 됩니다.
- ②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은 되어있지만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③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 ④ 그리고, **새만금청, 행복도시청, 우주항공청과 6위원회**는 모두 어디까지나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되는 것이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닙니다.

[결론] 새만금청, 행복도시청, 우주항공청, 권익위, 개보위 등의 성격

- 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O
- ②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X

[1] O [2] X (기관이 아니다)

Q1

중요도 █ █ □ 난이도 █ █ □

2013 행정사 등 총3회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검찰청
 - ② 병무청
 -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④ 경찰청

2026 선행정학 p.395

답 ③

출제당시에는 ③이 정답이었으나 2026.10.이후에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 ① [o] 출제당시와 현재(2025.12)까지는 맞는 지문이지만 2026.10.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개편(2026.10.)되면 틀린 지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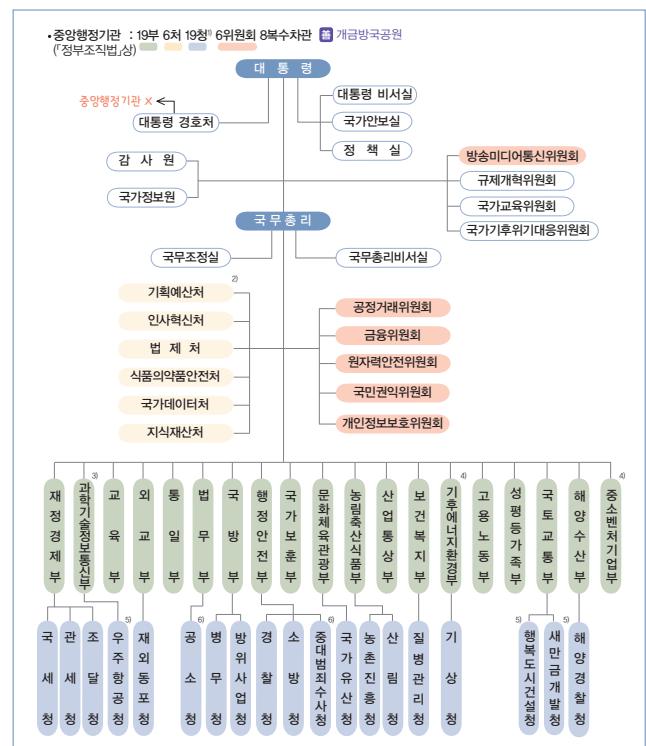
③ [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2020.6. 이전까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이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순한 각급 행정기관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2020.6.)으로 국민권익위 등 6개 위원회와 함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니므로 ③은 여전히 틀리다.

[↑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 1]

19부 3처 20청 6위원회 7복수차관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8복수차관

- ①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²
 - ② 검찰청 →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속)으로 분리·개편³
 - ③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 및 제2차관 신설
 - 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
 - ⑤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 신설 및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겸) 폐지
 - ⑥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 ⑦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확대·개편
 - ⑧ 여성기족부 → 성평등기족부로 확대·개편
 - 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
 - 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
 - ⑪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경찰의 독립성 강화⁴

- 1) 시행시기 : 2025.10.1. 공포 · 시행(기획재정부 및 검찰청 분리 · 개편 제외)
 - 2) 기획재정부 분리 · 개편 : 2026.1.2. 시행
 - 3) 검찰청 분리 · 개편 : 공포 후 1년 뒤(2026.10.2.) 시행
 - 4)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 2025.8.26. 시행



-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개편으로 19청이 됨(2025.10.1. 공포, 2026.10.2. 시행).
 -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중장예산기관)와 세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개편됨(2026.12. 시행).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처자관급과 달리 국무위원임.
 -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 · 시행)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장관)가 신설되고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검)가 폐지됨.
 -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증권벤처기업부 ~~국문종기복과외·복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전통적(이론상) 개념(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상설행정기관)과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종래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았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20.6.9)으로 국민권익위 등 6개 위원회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예전히 3정과 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님.
 -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공포)으로 검찰청이 공소청(기소전담, 법무부수속)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전담, 행안부수속)으로 분리 · 개편됨(2026.10.2. 시행)

18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2026 선행정학 p.396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조직개편이 상당 폭 이루어졌는데 시행시기도 다르고 헷갈려요... 어떤 내용들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OX

[1]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2] 현재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3] 현재 우리나라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정리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시기도 4차례에 걸쳐 분산되어 있구요.

① 2025.8.26. 시행 :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② 2025.10.2. 시행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 개편

 방송통신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특허청 ⇒ 지식재산처(총리소속)로 확대 · 개편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로 확대 · 개편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2차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제2차관 폐지)

③ 2026.1.2. 시행 : 기획재정부 분리 · 개편

④ 2026.10.2. 시행 : 검찰청 분리 · 개편 : 공포 후 1년 뒤

[결론]

① **기획재정부 분리 · 개편 : 2026.1.2. 시행**

② 검찰청 분리 · 개편 : 공포 후 1년 뒤(2026.10.2.) 시행

③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설,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 폐지(2025.10.2. 시행)**

④ **특허청 ⇒ 지식재산처,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2025.10.2. 시행)

[1] O [2] X(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지정 해제) [3] O

Q1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38%)

2025 국가9급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Q2

중요도 ■■□ 난이도 ■■□

2018 지방9급 등 총5회

다음 정부조직 중 행정 각부와 그 소속 외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기획재정부 – 특허청
- ② 국방부 – 방위사업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
- ④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 선행정학 p.395

정답 및 해설**정답 ②④(복수정답)**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지만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처"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 수업 때 자주 강조한 내용).

- ▣ ① [o]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인 「정부조직법」(제2조)으로 정한다(「헌법」 제96조).
- ③ [o]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로 지명되어 있다.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2025.10.1.)으로 현재는 재정경제부장관(경제부총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부총리)이 부총리이다.
- ④ [x] 과거에는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유일하였으나,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2025.10.1.)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확대·개편되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법률상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26 선행정학 p.395

정답 ①

과거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2025.10.1.)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확대·승격되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이울러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2026.1.2.)되어 현재 재정경제부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소속외청으로 두고 있다.

▣ 주요 외청의 소속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방부 소속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상청	

**【주의】 「행복도시청, 새만금청, 우주항공청, 6위원회」**

-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O
- └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X

19

책임운영기관 소속직원의 임용권

2026 선행정학 p.399

아 헷갈려!

소속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 장이 갖는다고 하면서 왜 또 임용시험 실시권은 책임운영기관장이 갖는다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없어졌나요?

OX

[1] 소속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임용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2] 소속책임운영기관 직원의 임용시험 실시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임용권은 중앙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있다.

[4] 현재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다.

정리

직원 임용권과 채용시험 실시권은 다릅니다.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직원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나, 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 국립중앙극장 직원임용권은 문체부장관

② 반면 **채용시험 실시권**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갖습니다.

ex) 국립중앙극장 직원채용시험 실시권은 국립중앙극장장

③ 그러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임용권은 중앙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있습니다.

ex) 과거 특허청 직원 임용권은 특허청장

④ 그리고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이었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현재 없을 뿐이지 중앙책임운영기관 자체는 여전히 법률상 존재합니다.

[결론]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권

	① 임용권	② 채용시험 실시권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장	소속책임운영기관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중앙책임운영기관장

[1] X (기관장이 아니라 소속중앙행정기관장) [2] O [3] O [4] O

21

각종 정책관리 및 평가주체

2026 선행정학 p.290

아 헷갈려!

각종 정책의 관리 및 평가주체가 어떤 것은 재경부장관, 어떤 것은 행안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등으로 되어있어 많이 혗갈리는데 명쾌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정리

제도의 성격에 따라 관장주체가 다릅니다. 시험에서 이를 자주 바꾸어 출제하는데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틀리게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정부업무평가제도 : 정부정책(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성과를 평가
- ② 책임운영기관제도 : 정부조직 중 집행업무만을 분리하여 성과중심으로 운영
- ③ 공공기관 관리제도: 공공법인(공기업, 중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관리·평가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
- ⑤ 국민참여예산제도 : 국가(중앙정부) 예산편성에 국민이 참여

[결론] 정책·제도별 관장기관

- ① 정부업무평가제도 : **국무총리**(기본계획 수립, 특정평가 등) – 정부업무평가운영위(총리 등 2인이 위원장)
- ② 책임운영기관제도 : **행정안전부장관**(지정·해제, 종합 평가 등) – 책임운영기관운영위(행안부장관이 위원장)
- ③ 공공기관 : **재정경제부장관**(지정·고시, 경영실적평가 등) – 공공기관운영위(재경부장관이 위원장)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 **행정안전부장관**(운영평가 등)
- ⑤ 국민참여예산제도 : **기획예산처장관**(제도 운영 등)

OX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지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2

노조전임자 등의 지위

2026 선행정학 p.551

아 헷갈려!

최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 무급휴직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맞나요?

정리

네, 맞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2023.12.11. 시행)으로 기존의 노조전임자(무급휴직)와 별개로 무급휴직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생겼습니다.

[결론]

- ① **노조전임자** : 무급휴직(공무원노조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음)
- ② **근무시간면제자** : 무급휴직 X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안에서 노조활동을 수행)

OX

- [1]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으로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 [2] 근무시간면제자는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O [2] O

Q1

중요도 ■■■ 나이도 ■■■

2017 국가7급 인사조직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선행정학 p.552

정답 및 해설

답 ④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① [X]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 ·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② [X] 출제당시 법률(2023.12.11. 이전까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2022.6.10. 「공무원노조법」 개정(2023.12.11. 시행)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3.12.11.부터는 근무시간면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는 여전히 무급 휴직이 원칙이다. 국가는 노조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지급금지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대신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틀린 지문이다.
- ③ [X]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의

[노조전임자 등의 급여(2023.12.11. 시행)]

- ─ 노조전임자 : 무급, 휴직 O
- ─ 근무시간면제자 : 유급, 휴직 X

→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보수 손실 없이 노조업무 수행 가능

24

겸임과 겸직

2026 선행정학 p.552

아 헷갈려!

겸임과 겸직이 다른 건가요?

정리

네, 다릅니다.

- ① **겸임은 인사제도**의 하나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지만,
- ② **겸직은 공직윤리 차원의 제도**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한 사람이 공직외부의 직을 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결론]

	겸임	겸직
성격	인사제도	윤리제도
원칙	허용	금지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40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확보 • 교수요원 임용 • 기관 간 긴밀한 협조 	

OX

- [1]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 [2] 임용권자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 하는 것을 겸직이라 한다?

[1] X(겸직) [2] X(겸임)

Q1

중요도 ■■■ 나이도 ■■■ (정답률 73%)

2025 국가9급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 ②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2026 선행정학 p.501

정답 및 해설

답 ④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등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

- ☒ ① [o]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의 이동을 말한다.
- ☒ ② [o] 겸임은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공직 내부에서 한 사람의 공무원에 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공직 외부의 직위를 겸하는 겸직과는 다르다.
- ③ [o] 강임은 같은 직렬 또는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결원의 한 보충수단으로서 징계인 강등과는 다르다.

▣ 배치전환의 종류

	개념	비고
전직	직렬을 달리하여 이동	시험 필요
전보	동일한 직렬·직급 내에서 직위·부서·부처 이동 등 보직변경	시험 불필요, 전보제한기간 ↳ 필수보직기간
파견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타기관에 근무하고 돌아오는 것	
전출입	인사관할권이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시험 필요
겸임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 부여	

0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026 선행정학 p.590

아 헷갈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정리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상호연관된 개념이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 ①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개념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현금적 채무(빚)이고,**
- ② **국가부채는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상 개념으로 채무(빚)뿐 아니라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장래에 갚아야 할 충당부채까지 포함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결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채무 (Gov't Debt)	국가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y)
작성기준	1986 IMF 재정통계편람	1993 OECD 국민계정체계(SNA)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근거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념	현재의 확정채무(법정채무)	현재+미래의 확정부채
구성요소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우발채무, 충당부채 등 불확정 채무 제외)	우발채무, 충당부채 등 불확정 채무 포함
작성범위	금융성기금 제외	금융성기금 포함
소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OX

- [1]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개념으로 현금주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는 채무규모이다.
- [2]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다.

[1] O [2] O

Q1

중요도 ■■□ 나이도 ■■■ (정답률 49%)

2025 국회8급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 ② 국가채무의 기관 포함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및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③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 ④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 ⑤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2026 선행정학 p.590

정답 및 해설

답 ②

이 문제는 고난도 헷갈리문제이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도 구분해야 하고 국가(중앙정부)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의 개념도 구분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가(중앙정부) 부채나 일반정부 부채나의 관점에서 정답이 같지는 문제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만을 포함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정부부채'에는 포함되지만 국가채무나 국가부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① [o]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 ③ [o] 1993 SNA에 의거 발생주의로 작성되는 "국가부채"와는 달리 "국채무"는 1986 IMF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이다.
- ④ [o] 중앙정부(국가) 뿐 아니라 지방재정,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적 지침(1993 SNA)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 ⑤ [o] 공공부문 부채 역시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04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026 선행정학 p.593

아 헛갈렸!

최근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문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조직도 분리·개편되었는데 중앙예산기관인 기예처와 국고수지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업무소관 등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정리

- ① 최근 7급 시험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기구와 제도의 변천에 대한 문제들이 킬러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분리·개편되어 9급도 출제 가능성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 ② 과거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였지만, 2026.1.2.부터는 중앙예산기관(기예처)과 국고수지총괄기관(재경부)이 분리·개편됩니다.

[결론]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구분	중앙예산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비고
1948~	기획처 예산국	재무부	
1954 ~	재무부 예산국		기획처를 재무부로 통합
1961 ~	경제기획원 예산실	재무부	경제기획원 신설
1994 ~	재정경제원 예산실		경제기획원과 + 재무부 = 재정경제원
1998 ~	기획예산위 : 기획, 예산, 개혁 재정경제부 예산청 : 예산편성, 집행	재정 경제부	예산기구 이원화
1999 ~	기획예산처	재정 경제부	기획예산위 + 예산청 = 기획예산처
2008 ~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획예산처 + 재정 경제부 = 기획재정부
2026 ~	기획예산처	재정 경제부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¹⁾

1) 이명박 정부 시절(2008) 중앙예산기능(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과 국고수지총괄기능(당시 재정경제부 국고국 및 세제실)이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으나, 이재명 정부에 의하여 원래대로 다시 분리·개편되었다(2026.1.2.시행).

OX

- [1] 김대중정부는 중앙예산기구와 중앙인사기구를 합의제기관형태로 설치·운영한 적이 있다.
- [2] 1961년 신설된 경제기획원은 국고 수입·지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3] 2026.1.2.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과 국고수지총괄기관(재정경제부)이 분리·운영되고 있다.
- [4] 국가채무는 기획예산처가 현금주의로, 국가부채는 재정경제부가 발생주의로 각각 관리한다.

33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2026 선행정학 p.693

아 헛갈려!

최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 행정학에서는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하고 뭐가 맞는 건가요?

정리

[1]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 헌법학계

- 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최근 판결(2025.2.27.)을 근거로 합니다.
- ② 다수 헌법학자들의 입장 :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2] 직무감찰대상이 된다는 입장 – 행정학계

- ① 「감사원법」 제24조 :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헌법재판소 판결은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불과 : 헌법재판소 판결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권한쟁의심판 결과일 뿐이며 위헌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

- ① 헌법학계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니
- ② 행정학계에서는 헌법이 아닌 구체적인 정부조직 관련 법률(「감사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더 지배적입니다.

OX

- [1] 감사원은 국회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 [2]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상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Q1

중요도 ■■□ 나이도 ■■■

2025 경정승진

우리나라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②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상 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 ④ 전통적 회계검사에서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하나, 성과감사에서는 지출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2026 선행정학 p.695

정답 및 해설

답 ④

감사원은 현번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 ▣ ① [x]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세입·세출 결산만 감사원의 검사대상이다. 따라서 헌법상 독립기관은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결과는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② [x]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의 헌법상 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감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감사원법」(제24조 제3항)상 현재로서는 직무감찰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 행정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④ [x] 반대이다. 전통적 회계검사에서는 지출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하나, 성과감사에서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중시한다.

▣ 독립기관 행정의 자율성

	예산사정 (기예차)	예산삭감시 의견반영	예비금제도	회계검사, 결산 확인(감사원)	직무감찰 (감사원)	고충처리대상 (국민권익위)
국회	○	○	○	○	X	X
법원	○	○	○	○	X	X
헌법 재판소	○	○	○	○	X	X
선관위	○	○	○	○	○ ¹⁾	X
감사원	○	○	X	-	-	X

1)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학계에서는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행정학에서는 「감사원법」(제24)에 근거하여 김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10

정보화 관련 최근 법률

2026 선행정학 p.755



최근 데이터나 정보화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허를 찌르는 고난도 불의타문제도 많이 출제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정리

기존의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최근 「공공데이터법」(2013), 「데이터기반행정법」(2020) 등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고난도 신경향 문제가 상당 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률별로 핵심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능정보화기본법(1995)

-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

-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 기본원칙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인 이용을 금지 · 제한해서는 안됨**

③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 데이터를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 · 과학적인 행정

④ 개인정보보호법(2011)

- 가명정보 : 추가정보없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는 본인동의 없이도 통계 · 연구 및 공익목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음**

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 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OX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이용이 보장된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은 공익목적으로라도 본인동의 없이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05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2026 선행정학 p.795

아 헷갈려!

특별자치단체도 일반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징수하고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정리

- ① 특별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일반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지고 일정부분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입니다.
- ② 다만, 구성원이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이므로 주민에게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든지,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 한다든지, 주민이 소환을 결정하지 못 하는 등** 일부 권한과 지위가 일반자치단체와 다릅니다.

[결론]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
설치·해산	법률로 설치(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거쳐)	행안부장관 승인으로 설치·해산(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인격	O	O
단체장	주민이 직접 선출	구성 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자치단체의회가 간접 선출
지방의회	주민이 직접 선출	구성 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경직)
임기	4년	X
위임사무	O	O
주민소환	O	X
조례·규칙	O	O
지방세 징수	O	X
세외수입 ¹⁾	O	O
지방채 발행	O	O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조합·협의회	설립 가능	설립 불가

1)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OX

[1] 특별자치단체는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을 수 없다?

[3] 특별자치단체장은 구성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Q1

중요도 ■■■ 나이도 □□ (정답률 85%)

2025 지방9급(수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 선행정학 p.806

정답 및 해설

답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 ▣ ①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이다.
- ② [o]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o]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단체장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다.

▣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승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법인 여부	법인	법인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관계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가능) • 지방자치단체조합장 * 조합장 : 규약에 따라 선임 (구성단체장이 겸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결기관) (구성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 특별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장 : 의회에서 간접선출 (구성 단체장이 겸직)
설립·해산 명령	명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권고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Q2

중요도 ■■■ 나이도 □□ (정답률 79%) 2025 지방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특정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 ㄷ.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026 선행정학 p.805

정답 및 해설

답 ②

ㄱ, ㄷ만 옳다.

- ▣ ① [o]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이므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제210조)에 의하여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분담금)은 부과·징수할 수 있다.
- ㄴ [x]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위임사무를 요청할 수도 있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도 있다.
- ㄷ [o]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출한다. 일반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간접선출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ㄹ [x]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간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성 단체장이 겸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년 12월 29일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84-1

A standard barcode representing the ISBN number 979-11-92405-84-1.

값 25,000원